# 20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예술강사 워크숍 [1권역-서울, 인천, 경기]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u>목 차</u>

│. 사업개요
1. 2025 예술강사 워크숍 개요
2. 20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3. 1권역(서울, 인천, 경기) 선정결과 및 강사 배치 일정
4. 2024년 대비 2025년 주요 변경사항
Ⅱ. <b>사업운영 ····································</b>
1. 학교-예술강사 배치
2. 사전방문협의 및 중간협의1
3. 출강 및 근태12
4. 예술강사 법정의무교육13
5. 예술강사 교과목별 의무연수 ·······1 <i>L</i>
6. 교육기자재 지원15
7. 학생 만족도 및 복무관리16
Ⅲ. 노무관리19
1. 예술강사 근로계약 관련20
2. 휴가 및 휴직21
3. 건강진단 및 잠복결핵감염검진3(
4. 증명서 발급31
5. 강사 급여 지급
부록1.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가이드 영상 QR

. 사업개요

- 1. 2025 예술강사 워크숍 개요
- 2. 20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 3. 1권역(서울, 인천, 경기) 선정결과 및 강사 배치 일정
- 4. 2024년 대비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1. 2025 예술강사 워크숍 개요

■ 행사명: 20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1권역(서울, 인천, 경기) 예술강사 워크숍

일시: 2025. 4. 10.(목)

O 인천: 10:30~11:30

**○** 경기: 13:30~14:30

O 서울: 16:30~17:30

■ 참석대상: 1권역(서울, 인천, 경기) 선발 예술강사(1,555명)

### 식순

구분	일정	주요 내용	비고
개회	5분	• 개회 및 운영기관 담당자 소개	│ - • 진행사회 및 발표 :
안내 및 유의사항	30분	<ul><li>2025 사업개요</li><li>사업 운영 안내</li><li>노무관리 안내</li></ul>	전승용 주임교수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질의응답	20분	• 질의응답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전담인력
폐회	5분	<ul> <li>폐회</li> </ul>	

# ▮ 1권역(서울, 인천, 경기) 담당자 소개

구분	성명	담당업무	내선번호
	손은진	Aschool 온라인시스템 관리     1권역(서울/인천/경기)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관리(월별출강 현황관리 등)     1권역(서울/인천/경기)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지원     홍보 및 민원 관리 등	032)860-8006
학교-강사 배치, 월별출강 계획 등	박지현	Aschool 온라인시스템 관리     경기지역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관리(월별출강 현황 관리 등)     경기지역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지원     홍보 및 민원 관리 등	032)860-8023
	이혜원	<ul> <li>Aschool 온라인시스템 관리</li> <li>인천지역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관리(월별출강 현황 관리 등)</li> <li>인천지역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지원</li> <li>홍보 및 민원 관리 등</li> </ul>	032)860-8021
급여,	윤지은	<ul> <li>e나라도움시스템 운영 관리(예산/정산)</li> <li>1권역(서울/인천/경기) 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노무/인사)</li> <li>서울지역 예술강사 지원</li> <li>교육진흥원, 1권역(서울/인천/경기) 교육청 지원</li> <li>홍보 및 민원 관리 등</li> </ul>	032)860-8008
급어, 노무 등	문수성	<ul> <li>e나라도움시스템 운영 관리(예산/정산)</li> <li>1권역(서울/인천/경기) 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노무/인사)</li> <li>서울지역 예술강사 지원</li> <li>교육진흥원, 1권역(서울/인천/경기) 교육청 지원</li> <li>홍보 및 민원 관리 등</li> </ul>	032)860-8005

# 2. 20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05.12.29. 제정 /'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630호)
- O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체부 공동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양 부처 MOU 체결('08)

# ■ 사업목적

- O 공교육 현장에 분야 별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 항상 및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

## ● 추진방향

- O 학교별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현장의 특성, 여건을 감안한 예술강사 지원
-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자원·교 육여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지원

## ● 추진체계

○ 추진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권역 지역운영기관 지원을 통한 운영

### 

(운영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 부처 간 업무 협의 및 예산 편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보조금 편성 및 교부
- 사업추진체계 협의예술강사 선발 및 노무 관리

#### [교육부]

- 부처 간 업무협의
- 시·도 교육청 업무 협조 요청

#### [시·도교육청]

- 지방교육재정 편성 및 교부
- 사업추진체계 협의

#### [지역운영기관]

• 예술강사 지원사업 권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운영

#### [학교 예술강사]

•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획 및 운영 ※ 국악, 무용, 연극,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공예, 사진, 디자인

#### [운영학교 담당교사]

- 사업참여학생(수혜자) 관리
- 예술강사와 협력수업 추진
- 출강결과 및 근태 확인 등

### ▮ 사업개요

- 사업명: 20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년 3월 ~ 10월(학교-예술강사 배치: 4월~8월)
- O 사업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교육부 인가)
- O 사업내용:
  -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 교과수업 등의 예술 교육 실시
  - 지역별 수요·특성·환경 등에 기반 학교 문화예술교육 추진 및 제공
- 강사료 지원: 1시수당 43,000원 지원, 사회보험 지원(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 ※ 식대, 법정의무교육비, 교통비, 근로자의 날 수당, 휴업수당, 건강진단비, 학교 사전방문 보조금 등 별도 지원
- 지원범위 ※학교급 및 분야별 지원 교육과정 상이, 복수운영 가능
  - 분야: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교육과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구 분	내 용						
선정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4월						
지원분야	0 국						
	분 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표 약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국 악	○(음악·글)분생활	0	○(음악)	0	0	0
	연 극	○(국어)	0	○(국어)	0	0	0
	영 화	×	0	×	0	0	0
지원영역	무 용	○(체육·즐)운생활	0	○(체육)	0	0	0
	만화애니메이션	×	0	×	0	0	0
	- 공 예	×	0	×	0	0	0
	사 진	×	0	×	0	0	0
	디 자 인	×	0	×	0	0	0
	※ 분야별 교육과정 복수신청 가능 ※ 평일 외(주말, 공휴일) 수업 운영 불가. 단, 5월 1일(근로자의 날) 제외 ※ 상기 교육과정 및 분야 외 임의 운영 불가(자유학년·학기제, 방과후학교, 기타 행사 지원 등)						
TIOLIA	○ 학교당 연 68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수요 및 지역별 예산규모 등에 따라 최종 결정						
지원시수	시수 ※ '분야-교육과정'건별 34시수 이상 신청 필요(예 : 연극-교과 34시수, 연극-창의적체험활동 34시 ※ 사업 지원 규모 조정 및 교육청 협의를 통해 '25년도 한시적으로 최소지원시수 변경 적 (최소지원시수 : 학교별 34시수, 분야별 17시수 이상)						
유의사항		공고 및 선정 관 교육청 협의를 <sup></sup> 물정 필요					1육과정,

- 협력기관: 시·도교육청
- 사업시행 총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O 1권역(서울, 인천, 경기) 운영기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산학협력단

# 3. 1권역서울 인천 경기 신정결과 및 강사 배치 일정

### 1.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사 및 학교 선정결과

### ■ 학교예술강사 선정결과

- 2025 1권역 활동 학교예술강사: 총 1,555명
  - 1권역(서울, 인천, 경기) 활동 학교예술강사

(단위 : 명)

_										<u>L 11 · 0/</u>
	구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합계
	서울	235	174	36	129	58	37	21	22	712
	인천	80	30	5	31	9	6	4	8	173
	경기	290	125	24	130	44	26	15	16	670
	합계	605	329	65	290	111	69	40	46	1,555

### ■ 학교 선정결과

O 2025 1권역 학교 선정: 총 1,991개교(인천 394교 + 경기 1,597교)

(단위 : 개교)

그ㅂ			학교수			하게
구분	초	중	고	특수	각종	합계
인천	256	72	55	10	1	394
경기	1,276	207	86	26	2	1,597
합계	1,532	279	141	36	3	1,991

# 2. 학교-예술강사 배치일정

- O 선정발표: 2025년 4월 4일
  - 온라인시스템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내 선정 결과 게시
- 정규배치(1~2회차): 2025년 4월 16일(수) ~ 4월 24일(목)
  - 정규배치 1회차(상호희망재배치): 학교·강사 모두 재배치를 상호 희망할 시 우선 배치
  - 정규배치 2회차: 예술강사별 출강 희망학교(1~3순위를 신청하고, 해당 결과 및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전국 공통)을 고려하여 배치
- 추가배치: 2025년 4월 25일(금) ~ 8월(예정)
  - 정규배치 이후 추가배치(매주 금요일) 절차를 통해 학교-강사 배치 진행
- 예술강사 출강기간: 2025년 4월 ~ 9월(※ 예산 추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4. 2024년 대비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운영기관 관리	○ 운영기관 다년지원(2년, '23, '24년) 적용 ○ 운영기관: 총 17지역 17개 단체 - 지역운영단체 공모 선정 - 8개 분야 통합운영, 지역별 1개 기관선정 ○ '25년 운영기관 공모 선정 진행(9월 예정) ○ 운영기관 점검 시행 - 지역별 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 본격 시행	○ 운영기관 단년지원(1년, '25년) 적용 ○ 운영기관: 총 6개 권역 6개 기관(단체) ○ '26년 운영기관 공모 선정 진행(12월 예정)		
보조금 예/정산	○ 보조금 4차 분할 교부 ○ 운영기관 대상 보조금가이드 수립, 배포 ○ 보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실태점검 ○ 보증보험 증권 가입(1~4차) 등 (1~4차 교부 전 분할하여 가입) ○ 월별 현황보고 작성 및 제출 ○ 잔여시수 대비 재원 잔액관리 및 집행 필요 ○ 보조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추진 등 관리 ○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공모 협약서 체결	○ 보조금 3차 분할 교부 예정 ○ 보증보험 증권 가입(1~3차) 예정 등 (1~3차 교부 전 분할하여 가입 예정) (이외 좌동)		
시스템 지원	O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및 고도화(추가개발) ※ 추가 개발: 학교 및 예술강사 풀 관리 체계 고도화, 학교선정 및 강사선발·배치 관리 기능 추가, 평가, 통계 관련 기능 등 정책 변경사항 보완 예정	O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관리		
학교 선정	<ul> <li>○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지원</li> <li>※ 각종학교로 명칭 변경</li> <li>○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학교 접수</li> <li>○ 각 권역 지역운영기관 가선정 진행 → 17개 시·도교육청 검토 → 지역운영기관 최종선정</li> <li>○ 개교예정학교 접수 추진</li> <li>※ '24년 3월 개교예정학교 대상</li> </ul>	(좌동)		
지원 교육과정	<ul><li>○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li><li>※ 교육과정 활동 중심 지원</li><li>※ 고등학교 '교과' 8개 분야 전체 지원</li></ul>	(좌동)		
지원 시수	○ 학교당 연 68이상 450시수 이하 ※ 건별(분야-교육과정) 최소 34시수 ○ 예술강사 최대시수: 476시수(법정의무교육 5시수 포함) ※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시업 '아동' 분야 중복 참여자의 경우 최대시수 합산 관리 예정	○ 학교당 연 68이상 450시수 이하 ※ 건별(분야-교육과정) 최소 34시수 ※ 사업규모 조정 및 교육청 협의를 통해 '25년도 한시적 으로 최소지원시수 조정 (학교별: 34시수, 건별: 17시수 이상) ○ 예술강사 최대시수: 476시수(법정의무교육 5시수 포함) ※ 복자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종료로, 관련 강 사 시수 별도 관리 예정		
강사 처우	<ul> <li>○ 채용주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li> <li>※ 고용주체 일원화</li> <li>○ 강사료: 1시수 기준 43,000원 지급</li> <li>○ 식대: 1인당 월 80,000원 지급</li> <li>○ 도서벽지출강보조금 1시수 기준 12,000원 지급</li> </ul>	사 시수 별도 관리 예정 (좌동)		
강사 자격요건	O A유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B유형(창의적 체험활동) 으로 분리하여 자격기준 운영	(좌동)		

구분	2024년	2025년
강사 선발	○ 교육진흥원 선발 및 채용 ○ 전년도활동강사 모집전형 및 신규강사 모집전형으로 분 리하여 추진 - 전년도활동강사 모집전형: 서류심사 ※ '24년도 선발심사에서 합격하여 3년('24~'26년) 활동 자격기간 부여 - 신규강사 모집전형: 서류/면접심사 진행	○ 교육진흥원 선발 및 채용 ○ 전년도활동강사 모집전형 추진 - 전년도활동강사 모집전형: 적합성 검토 ※ '24년도 선발심사에서 합격하여 3년('24~'26년) 활동자 격기간 부여 - 유형변경 희망강사: 서류/면접심사 진행 ○ 신규강사 모집전형 미추진
강사 배치	O 온라인 시스템 활용 통한 예술강사 배치 신청 및 운영기관 배치 실무·관리 - 3회 정규배치(상호희망재배치 및 정규배치2,3차) ※ 상호희망재배치 비희망(취소) 접수 제도 시행 ※ 정규배치 완료 후, 연중 추가배치(3~9월)진행	O 온라인시스템 활용 통한 예술강사 배치 신청 및 운영 기관 배치 실무·관리 - 2회 정규배치(상호희망재배치 및 정규배치 2차) ※ 상호희망재배치 비희망(취소) 접수 진행 ※ 정규배치 완료 후, 연중 추가배치 진행
근로 계약	○ 계약주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선발 및 배치 강사 대상 근로계약 추진 ※ 근로계약 체결 전 출강 불가 ○ 월 59시수 범위 내에서 출강 가능	(좌동)
법정의무 교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전체강사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운영기관 - 이수관리 및 교육비(75,000원) 지급	(좌동)
교과목별 의무 연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신규강사 교과목별 의무연수 실시 - 유형변경강사 교과목별 의무연수 실시 ○ 운영기관 - 이수관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교과목별 의무연수 실시 ○ 운영기관 - 이수관리
교육 <del>활동관</del> 리	○ 출강시수 관리: 월별 출강시수 사전승인 후 출강결과 등록 및 승인 ※ (사전승인) 월별 출강시수 관리는 '월별 출강 계획서'를 통해 관리 ※ (출강결과승인)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운영기관승인 ○ 거주지 우선 활동 가능 및 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해중복 지역 추가배치 및 활동 가능 ○ 교육활동 협의를 위하여 사전방문 및 중간 협의 실시	(좌동)
강사 평가	O 예술강사 역량강화 목적의 평가 실시(온라인 학생 만족도 조사 등)	(좌동)
교육 기자재	O 해당 분야 신규 선정 학교 및 기자재 지원 이력이 있는 학교 중 사용연수(8년)가 초과된 학교 ※ 34시수 이상 배치완료 학교(창의적체험활동) ※ 지원 대상학교 중 실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 학교 대상 교육기자재 지원 미추진 ○ 예술강사 대여 교육 기자재 지원은 '24년과 동일 분야 진행(사진, 만화·애니, 디자인)

Ⅱ. 사업운영

1.	학교-예술강사 배치
2.	사전방문협의 및 중간협의
3.	출강 및 근태
4.	예술강사 법정의무교육
5.	예술강사 교과목별 의무연수
6.	교육기자재 지원
7.	학생 만족도 및 복무관리

# 1. 학교-예술강사 배치

### 개요

- 추진대상: 2025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정 운영학교 및 선발 예술강사
- 추진목적: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정학교의 희망 교과 분야 및 선발 예술강사의 배치 적임자 여부를 고려하여 배치
- O 추진기간
  - 정규배치(1~2회차): 2025년 4월 16일(수) ~ 4월 24일(목)
  - 추가배치: 2025년 4월 25일(금) ~ 8월(예정)

### ■ 서울지역 관련 안내사항

- 학교선정: '25년도 지방교육재정 예산이 미 확보된 상황으로 운영학교 선정 보류중. 추후 예산 확정 후, 서울지역 학교 대상 재안내 예정
- 강사배치: 서울지역 선발강사는 추가배치부터 타지역 배치 지원 가능
  - **※** 추가배치: 2025년 4월 25일(금) ~ 8월(예정)
- 추진주체: 각 권역 지역운영기관(1권역(서울, 인천, 경기)-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 배치시수: 운영학교(최대 450시수) / 예술강사(최대 476시수 ※ 법정의무교육 5시수 포함)
  - ※ 학교배치 최대 471시수 + 법정의무교육 5시수 = 최대 476시수
  - ※ 예술강사 간 시수 편차 해소를 위해 각 지역별 당해 연도 선정 학교 및 선발 예술강사 수를 고려한 분야별 평균시수의 ±30% 구간의 '기준시수' 이내에서 배치
  - ※ '기준시수'는 정규배치 2회차에 한하여 적용(정규배치 1회차 및 추가배치 미적용)
- O 배치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활용하여 정규배치 및 추가배치 진행
  - 정규배치 1회차(상호희망재배치): 학교·강사 모두 재배치를 상호 희망할 시 우선 배치
  - ※ 예술강사의 전년도 출강학교 중 최대 2개 학교까지 신청 가능
  - -> 비희망(취소) 건에 한하며 기존 희망학교 및 희망강사 변경은 불가
  - 정규배치 2회차: 예술강사별 출강 희망학교(1~3순위)를 신청하고, 해당 결과 및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전국 공통)을 고려하여 배치
  - ※ 정규배치 이후 추가배치(매주 금요일) 절차를 통해 학교-강사 배치 진행

### O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

#### [참고] 202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

순위	정규배치	추가배치		
1	지역, 교육과정, 세부분야(국악분야)	지역, 교육과정, 세부분야(국악분야)		
2	출강 희망학교 순위(1~3순위)	출강 희망학교 순위(1~3순위)		
3	생활권(기초자치단체단위)	생활권(기초자치단체단위)		
4	교급	교급		
5	사업 참여 연차	근거리		
6	근거리	사업 참여 연차		

- ※ 생활권: 강사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 기준 기초자치단체(선거구) 단위
- ※ 연차: 최근 7년 이내(2018~2024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1시수 이상 출강승인 완료) 여부 기준
- ※ 배치 적임자 기준에 적합하여도 학교가 강사 배치 비희망으로 신청한 경우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 1권역(서울, 인천, 경기) 생활권 현황

지역(수)	생활권(기초자치단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поени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울특별시 (25개 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23711 1)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10개 군·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특례시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31개 (특례)시·군)	오산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 /'\ L/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 2. 사전방문협의 및 중간협의

- 사전방문협의 및 중간협의
- ① 사전방문협의 및 월별출강계획
- 학교와 예술강사 배치 이후, 상호 일정 협의하여 '사전방문'진행
  - ※ 사전방문 전 사전방문보고서 미리 제출하는 건은 승인 불가
  - 예시) 사전방문보고 제출일: 25.4.30. / 사전방문일시: 25.5.2. → 불가
- 협의 후, 온라인시스템 '사전방문 보고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등록
  - ※ 비대면 및 콘텐츠 제공 수업은 코로나19시기에 일시적 허용하였으나, 2024년부터 전면 대면수업이 원칙이므로 해당문구 기재 시 승인 불가
- 협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하면 학교 및 운영기관과 재협의를 통해 진행

#### ② 중간협의

- 연간 교육활동 진행 중반부에 교육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업진행 방향에 대한 조율을 위해 학교-강사 간 중간협의를 권장함(단, 강사와 학교가 상호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
- 중간협의 진행 시, 학교 배치시수 중 강사별 1시수가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되며, 예술강사의 중간협의 비용은 온라인시스템 출강결과 등록 및 담당교사의 출강승인을 근거로 지급됨(강사와 연간계획 수립 시 해당사항 고려 필요)

#### ※ 해당 학교 출강 강사 대상 1회 지급

※ 필요 시 연간 교육활동 종료 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사후협의 진행 가능. 단, 비용 지급 별도 없음

### 교육활동 변경 운영

-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교육 활동 변경, 포기 및 추가배치 등 교육활동의 모든 사항은 온라인시스템에 반영된 사항을 근거로 진행
- 예술강사가 타 강사에게 배치 받은 시수를 개인적으로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불가 하며, 변경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교육활동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 학교-강사 간 관련 내용 협의 → 학교에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으로 공문 제출 → 운영기관 검토/승인 및 온라인시스템 상 변경사항 반영 등 처리 진행

# 3. 출강 및 근태

### ■ 출강결과 등록 유의사항

- 예술강사는 출강결과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매월 강사 급여 수급
-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출강결과 등록 및 출강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강사료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월 59시수 및 연간 지원시수(배정받은 시수)를 초과한 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음.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관련 강사비는 학교 부담으로 지급 받아야 함.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출강 불가(근로자의날(5.1) 수업가능)

예술강사 교육활동 등록	학교 담당교사 승인	기관별 최종 승인	강사료 지급
<ul><li>✓ 마감일 : 당월 말일</li><li>✓ 대상 : 예술강사</li><li>✓ 교육활동 관련 내용</li><li>온라인시스템 내 등록</li></ul>	<ul><li>✓ 마감일 : 익월 5일</li><li>✓ 대상 : 학교 담당교사</li><li>✓ 예술강사가 등록한 내용 확인 후 출강승인</li></ul>	<ul><li>✓ 마감일 : 익월 6일</li><li>✓ ㄴ대상 : 지역운영기관, 노무법인, 진흥원</li><li>✓ 담당교사 승인 건에 대해 최종 승인</li></ul>	<ul><li>✓ 지급일 : 익월 13일</li><li>✓ 최종 승인된 강사료 지급</li></ul>

### ● 학교 예술강사 근태 관리

- 추진목적: 학교예술강사 근태 관리를 통한 복무 체계 점검 및 인사관리 시행
- 추진기간: 2025년 4월 ~ 9월
- O 추진방법: aschool 시스템을 활용한 근태 관리
- O 주요내용
  - (점검범위) 당해연도 활동 학교예술강사의 '지각, 결강, 결근'여부
  - (점 검 자) 당해연도 운영학교 담당교사
  - (점검방법)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사 근태 확인
  - ※ 온라인시스템 근태 현황 확인 경로 : [교육활동] > [근태현황]

# 4. 예술강사 법정의무교육

### 개요

○ 추진목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의무사항 준수

○ 추진대상: 2025 선발 학교예술강사 중 근로계약 체결자

○ 추진기간: 근로계약 시작일 ~ 종료일

O 추진내용: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교육비 지원

### ▋ 세부내용

○ 이수기간: 근로계약기간 내 ※ 근로계약기간 외(전/후) 이수 불인정 및 비용 지급 불가

○ 이수방법: 교육진흥원이 제공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O 이수과목

- (4시수) 4대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1시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비 : 전체 교육과목(5시간) 이수 시, 75,000원 지급

O 이수절차



※ 근로계약기간 외 이수 시 불인정

※ 출강시수와 교육시간을 합하여 월 59시수 초과 불가

② (Aschool) 이수 계획 등록

lacksquare

③ (온라인 아르떼 아카데미) 교육 이수 및 이수증 발급

※ 등록한 이수 계획 월에 이수

**4**)

(Aschool) 교육비 신청

# 기타사항

- 교육진흥원이 제공한 법정의무교육만 인정(타 기관 이수증 불인정)
- 근로계약기간 내 교육 이수 및 교육비 신청
-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학교예술강사 복무관리에 반영

# 5. 예술강사 교과목별 의무연수

### Ⅱ 개요

○ 추진목적: 교육현장 및 대상의 이해, 양질의 수업을 위한 기획 및 실행 방법 등 연수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술강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

○ 추진대상: 2025 선발 유형변경강사 총 19명

O 추진내용

- 연수명: 교육과정의 이해

- 연수일시: 2025. 2. 17.(월) 13:00 ~ 17:00(4시수)

- 연수방법: 비대면 원격(ZOOM)

- 연수내용

시 간	형 태	내 용
13:00~14:00	강의	[교육과정이란] • 교육과정의 역사 및 의미 알아보기 •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사 • 국가수준 교육과정부터 교사 교육과정 살펴보기
14:00~15:00	강의 및 실습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실시간 퀴즈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기 •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살펴보기(1),(2)
15:00~16:00	강의 및 실습	[교육과정 문해력과 교사 교육과정] • 교육과정 문해력 알아보기 • 나만의 교육과정 실습하고 공유하기
16:00~17:00	강의 및 실습	[교육과정과 디지털 소양]  • 교육에서의 AI 활용 가능성  • 선택교육과정의 이해와 선택교육과정 만들어보기

#### O 기타사항

- 비대면 진행으로 별도 비용 지급 없음

# 6. 교육기자재 지원

### 교육기자재 지원

- 지원목적: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수업 운영 지원
- 지원분야: 사진(사진기 세트) /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태블릿 PC)
- O 운영방식
  - 해당 분야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진행, 신청 강사에 한하여 교육 기자재 대여 진행
  - 지역운영기관 협조를 통해 해당 지역 신청 강시에게 **대면으로 기자재 대여 및 화수하는 방식으로 지원**
  - 예술강시는 기자재 수령 및 반납 시 운영기관과 상호 확인 하에 Aschool 내 인수확인서/반납확인서 등록
  - 대여 기자재(사진기 세트, 태블릿PC 세트)대여 후 손망실 발생 시, 예술강사가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함
  - ※ 기자재 손상 및 분실 발생 시, 온라인시스템 메뉴를 활용한 손망실보고서 등록 필수
  - ※ 태블릿PC 세트의 경우, 시범운영 중(`22년: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 `23~24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분야)

#### O 진행일정

일정	주체	내용
3월 3주	진흥원 →운영기관	O 대여 교육기자재 18(화) 이후 순차 배송, 운영기관(대표기관)으로 일괄 배송 예정 ※ 사진기 세트의 경우, 각 권역 25년 선발 강사 중 사진강사 인원 수 만큼 배송 ※ 태블릿 PC의 경우, 각 권역 25년 선발 강사 중 작년 대여한 강사 수 만큼 배송
3월 4주	진흥원 →예술강사	ㅇ 예술강사 대여 교육기자재 신청 안내 및 Aschool 접수
4월 2주	진흥원 →운영기관	ㅇ 대여 교육기자재 신청자 명단, 인수확인서 포함하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4월 3주 ~ 5월 1주	운영기관→예술강사 예술강사→진흥원	○ 예술강사 교육기자재 대면 인수 진행 → 담당자와 손망실 여부, 일련번호 상호 확인 필요 ○ 예술강사 인수확인서 Aschool에 제출 → 운영기관에서 작성 및 등록 가능하도록 노트북 지원 필요 ※ 서울지역은 추가배치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간 설정 ※ 기자재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하여, 첫 출강 일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출강가능일(4/21) 전주부터 인수 진행
5월 2주	운영기관→진흥원	o 운영기관 인수 공문 진흥원에 제출

# 7. 학생 만족도 및 복무관리

### 개요

- **○** 추진일정: 2025. 4. ~ 2025. 9.(예정)
- 추진대상: 배치받은 분야-교육과정 건의 수업이 종료되었으며 최소 1시수 이상 수업 진행한 예술강사 및 수혜학생
- O 추진주체: 수혜학생, 운영학교, 예술강사, 각 권역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 추진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활용

### ▶ 추진목적

○ 학교예술강사 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역량관리 및 복무관리를 통한 자체 복무 점검 기대

### ■ 주요내용

- ① 학생 만족도 조사
- O 대상자: 배치받은 분야-교육과정 건의 수업이 종료된 예술강사
- O 수행자: 예술강사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급의 수혜학생
  - ※ 단,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제외
- 조사시기: 분야-교육과정 건별 수업 종료 후 실시
  - ※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내용 재안내 예정

대상	절차	1차	2차	3차(최종)
운영 학교	조사실행 및 마감	7월 2주차 ※ 4~7월 중 수업 종료되는 학교	9월 2주차 ※ 1차 기간에 조사하지 못한 학교	9월 5주차 ※ 2차 기간에 조사하지 못한 학교
운영 조사결과 임관 점검 및 기관 게시		(결과점검) 7월 3주차	(결과점검) 9월 3주차	(결과점검) 10월 3주차
		(결과게시) 7월 4주차 ※[마감처리] 완료 건에 한하여 게시	(결과게시) 9월 4주차 ※[마감처리] 완료 건에 한하여 게시	(결과게시) 10월 3주차 ※[마감처리] 미완료 건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검토 후 게시
예술 강사	조사결과조회	7월 4주차	9월 4주차	10월 4주차

- 운영학교는 수업 건별 종료 시점 기준으로, 1차, 2차, 3차 마감기한 내 조사 1회 실시
- 운영기관 조사결과 게시 이후에는 조사결과 수정 불가함에 따라, 조사결과 점검 중 수정필요사항 확인될 시, 점검시기에 수정 완료되도록 진행 필요
- 조사결과는 수업 종료 시점 및 학교별 조사완료 시점에 따라 3회에 나누어 게시되며, 예술강사는 게시 이후 상시 확인 가능

### ② 복무관리

O 대 상 자 : 근로계약 체결 및 최소 1시수 이상 출강한 예술강사

○ 수 행 자 : 교육진흥원 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

○ 추진방법 :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 추진시기 : 사업 기간 및 예술강사 개인별 근로계약 기간 내의 복무관리 상시 적용

○ 추진절차 : 사업종료월의 출강결과 등록 건의 승인 및 검토와 최종 강사료 지급 결정 직후, 복무관리 사항 평점 산정

○ 추진내용: 근로계약 이행 및 관리, 출강시수 관리, 법정의무교육 이수

- 지표별 정의

연번	지표	세부내용
1	1 근로계약 이행	- 근로계약 체결의무 이행 여부 사항
'		※ 근거 : 취업규칙 제7조제4항 참고
		- 연간 계약 변경사항 등 계약관리 협조 사항
2	2 근로계약 관리	· 추가배치 등 변경 사유 발생 및 최초출강일 대비 14일 이내 체결 여부
		· 단, 변경 계약없이 신규 계약 유지 시, 신규 계약의 일정만 고려
	3 출강시수 관리	- 출강결과 등록 및 관리 이행 여부 사항
3		· 출강시수 미등록만 해당
4	법정의무교육	- 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사항

- 지표별 세부내용

지표	세부내용			
	- 출강 이전 계약 : 5점 / 출강 이후 계약: 0점			
	적용	당 기준	반영	
근로계약 이행	출강 출강 중이나 근로	·계약을 <b>미체결</b> 한 예술강사	· 0점 처리	
10	계양   사업기1	간 종료일 이내에 : <b>미체결</b> 한 예술강사	· 0점 처리	
	- 출강 이전 변경 계약 : 5점	점 / 출강 이후 변경 계약: 0점		
		당 기준	반영	
근로계약 관리	출강 이후 출강 중이나 변경 근	근로계약을 <b>미체결</b> 한 예술강사	· 0점 처리	
		간 종료일 이내에 뱎을 <b>미체결</b> 한 예술강사	· 0점 처리	
	- 기간 이내 처리 : 15점 /	기간 이외 처리: 0점		
	적용 기준		반영	
출강시수 관리	당월 출강결과 미등록 시수 발생 시		· 시수 당 1점 감점(최대 15점	감점)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미등록 시수		· 시수 당 1점 감점(최대 15점	감점)
	※ 미등록 시수 : 예술강사가 당월 출강결과를 기한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고, 이후에 등록하게 되는 시수			

- 기준 준수 : 15점 / 기준 미준수: 0점

### 법정의무 교육

적용 기준	반영
5대 법정의무교육 이수	· 15점 반영
5대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 0점 처리

- ※ 단, 교육을 이수한 후 온라인시스템에 이수증 등록 필수 (이수증 미등록 시 교육 미이수로 간주되어 0점 처리 됨)
- ※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근로계약 변경은 불가
- ※ 법정의무교육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안내문 참고

#### ③ 종합결과

○ 조회일정 : 2025. 10.(예정) ※ 추경 등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O 대 상 자 : 연간 최소 34시수 이상 출강한 예술강사

○ 수 행 자 : 교육진흥원 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

○ 결과분석 방법 : 온라인시스템 활용

- 종합결과(100점 만점)=학생 만족도조사(60점)+복무관리(40점)

※ 출강한 학교 일체 학생 만족도 조사 미실시하여 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예술강사의 경우 종합결과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별도 조치 없음

#### ④ 결과 환류(연수 제공) ※ 운영 내용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 대 상 자 : 종합결과 70점 미만 예술강사

**○** 운영기간 : 2025. 11.(예정)

○ 운영방식(안): 8시간(1일) 교육 제공

-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주요 내용
	· 지표 대비 연수역량과 연계되는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학생	(강사별 취약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제공)
민족도 조사	· 해당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전문가 또는 관련 교육강사 초빙
	· 교육시간 6시간 편성
	·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계약관리 협조 등 노무 관련 사항 안내
복무관리	· 출강결과 등록 등 교육활동 관리 전반 및 노무 관련 사항 안내
	· 각 지표별 혹은 항목별로 온라인시스템 활용 안내 포함
	・교육시간 2시간 편성

Ⅲ. 노무관리

- 1. 예술강사 근로계약 관련
- 2. 휴가 및 휴직
- 3. 건강진단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4. 증명서 발급
- 5. 강사 급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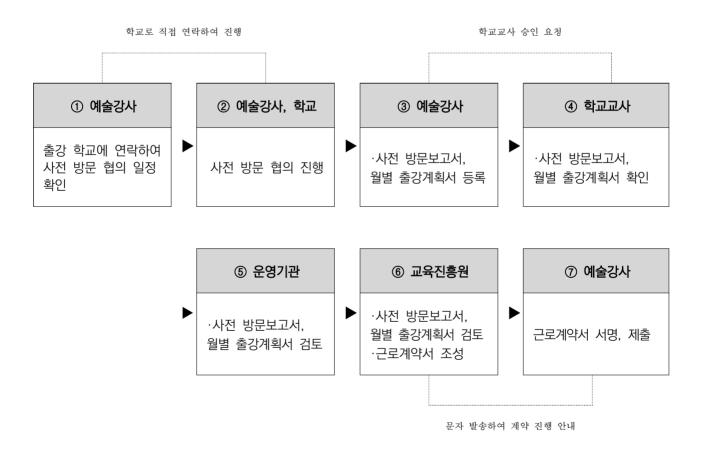
# 1. 예술강사 근로계약 관련

### 근로계약

### ※ 근로계약 체결 전, 출강 불가

- 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 서류인 [사전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온라인시스템 제출
  - **총 근로기간** 또는 **총 시수**가 변경되었을 때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므로 [월별출강계획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변경 제출이 필요함.
  - 2개 이상의 학교에 출강 시, 먼저 출강하는 학교 건을 토대로 온라인상 제출하고 근로계약 체결한 후 이후 협의한 학교 건은 추가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됨.

### ○ 근로계약 체결 절차



- 20 -

# 2. 휴가 및 휴직

## ■ 휴가 및 휴직

○ 시행목적: 휴가/휴직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의무사항 준수 기반 마련

### O 세부내용

- 시행대상: 2025 선발 학교예술강사 중 근로계약체결자
- 시행기간: 근로계약 시작일 ~ 종료일
- 시행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신청

구분	휴가	휴직
	출산전후휴가	
모성보호	난임치료휴가	_
TOTY	배우자출산휴가	_
	유산·사산휴가	
이 기재 아닌데이	기즈도납증기	가족돌봄휴직
일·기정 양립지원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기타	경조사휴가 병가휴가	기타휴직(무급)

# O 출산전후휴가(모성보호)

구분	내용
근거	O 근로기준법 제74조
대상자	O 근로계약체결자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예술강사
휴가기간	O 근로계약기간 내 출산(예정)일 전/후 단태아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 미숙아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 다태아가 미숙아인 경우 휴가기간은 120일 - 출산일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필수 - 휴가기간은 휴일(휴무일) 포함 - 휴가기간은 <b>강제 부여로 90일 모두 사용</b> 해야함 (근로계약기간 때문에 90일이 안되는 경우 제외)
	※ 90일 예시출산 전출산일출산 후44일 이하1일45일 이상
분할사용	O 가능 : 해당자만 출산 전 44일(다태아 59일)에 분할사용 - 해당자 : ①유사산 경험자 ②휴가 신청 시 만40세 이상인자 ③유사산 위험을 진단 받은자 - 신청방법 : 매 분할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시스템 신청
	o 단태아 / 다태아 : (휴가 시작 30일 전까지) 온라인시스템 신청 o 미숙아 : (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지역운영기관 서면 신청 - 제출서류 : ① 대체강사요청서 ② 증빙(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
	▼
절차	▼
	o 고용보험센터 급여신청(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예술강사 o 온라인시스템 급여신청 - 제출서류 : 고용보험센터 통지결과(지급액 결정 통지서)
	▼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후 추가(차액) 금액 작성     ○ 익월 13일 휴가급여 지급
휴가급여	○ 통상임금 100% ○ 60일(다태아75일)까지 교육진흥원 지급, 이후 30일(미숙아40일/다태아45일)은 고용보험센터 지급 ○ 교육진흥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차액 또는 전액 지급 : 별첨1 참고
유의사항	O 출산전후휴가 중 유사산하는 경우, 유사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임신기간에 따른 유사산휴가 부여

# O 배우자출산휴가(모성보호)

구분	내용		
근거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상자	O 근로계약체결자 중 배우자가 출산한 예술강사		
휴가기간	○ 근로계약기간 내 총 20일 - 휴가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휴가기간은 <b>강제 부여로 20일 모두 사용</b> 해야함 (근로계약기간 때문에 20일이 안되는 경우 제외)		
분할사용	O 가능 : 최대 3회		
	예술강사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시스템 신청 - 제출서류 : 증빙(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운영기관 이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교육진흥원		
	▼ ○ ○ ○ ○ ○ ○ ○ ○ ○ ○ ○ ○ ○ ○ ○ ○ ○ ○ ○		
절차	<ul> <li>오라인시스템 휴가/휴직 확인서 [작성] &gt; [출력]</li> <li>노무법인 이 고용보험센터 접수</li> <li>이 온라인시스템 휴가/휴직 확인서 [접수완료] ※ 완료 안내 문자 자동 발송</li> </ul>		
	▼		
	o 고용보험센터 급여신청(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예술강사 o 온라인시스템 급여신청 - 제출서류 : 고용보험센터 통지결과(지급액 결정 통지서)		
	▼		
	<b>운영기관</b> 이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후 추가(차액) 금액 작성 이 익월 13일 휴가급여 지급		
휴가급여	○ 통상임금 100% ○ 20일 고용보험센터 지급 ○ 교육진흥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차액 또는 전액 지급 : 별첨1 참고		
유의사항	O 출산일부터 120일 내 사용 가능		

# O 유산·사산휴가(모성보호)

구분	내용		
근거	O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대상자	O 근로계약체결자 중 유산·사산한 예술강사		
휴가기간	○ 근로계약기간 내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       휴가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분할사용	○ 불가		
절차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시스템 신청 예술강사 - 제출서류 : ① 대체강사요청서(휴가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② 증빙(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  ○ 온라인시스템 휴가/휴직 확인서 [작성] > [출력]  노무법인 ○ 고용보험센터 접수 ○ 온라인시스템 휴가/휴직 확인서 [접수완료] ※ 완료 안내 문자 자동 발송  ▼  ○ 고용보험센터 급여신청(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예술강사 ○ 온라인시스템 급여신청 - 제출서류 : 고용보험센터 통지결과(지급액 결정 통지서)  ▼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후 추가(차액) 금액 작성		
	운영기관 이 역월 13일 휴가급여 지급 이 역월 13일 휴가급여 지급		
휴기급여	○ 통상임금 100% ○ 60일까지 교육진흥원 지급,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센터 지급 ○ 교육진흥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차액 또는 전액 지급 : 별첨1 참고		
유의사항	_		

# O 난임치료휴가(모성보호)

구분	내용	
근거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항	
대상자	O 근로계약체결자 중 난임치료를 받고자하는 예술강사	
휴가기간	O 근로계약기간 내 치료(예정)일부터 6일 이내	
분할사용	이 가능	
절차	예술강사 ○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온라인시스템 신청 - 제출서류 : 증빙(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휴가급여	○ 통상임금 100% ○ 최초 2일 유급(시스템 자동 책정)	
유의사항		

# ○ 가족돌봄휴가(일·가정 양립지원)

구분	내용		
근거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대상자	○ 근로계약체결자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예술강사		
	O 근로계약기간 내 총 10일 / (한부모) 15일 / (*특별한 사정) 10일 추가		
휴가기간	* 특별한 사정이란? ①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관련 - 가족이 보유자인 경우 -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교(원)중지 요청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가족이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업(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분할사용	O 가능		
절차	예술강사 ○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온라인시스템 신청 - 제출서류 : 증빙(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휴가급여	O 무급		
유의사항	O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족돌봄휴직(일·가정 양립지원)

구분	내용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대상자	○ 근로계약체결자 중 <b>근속기간이 6개월(연속X) 이상</b> 이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예술강사 ※ 근속기간 6개월은 기수 상관없이 2021년부터 인정				
휴직기간	○ 근로계약기간 내 총 90일				
분할사용	O 가능 : 최대 2회(최소 30일 이상으로 분할)				
절차	예술강사       ○ (휴가 시작 30일 전까지) 온라인시스템 신청         - 제출서류: ① 대체강사요청서       ② 증빙(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       이 정상복귀: 휴직복귀신청서 운영기관 제출(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이전)         ○ 조기복귀: 운영기관 알림 및 조기복귀요청서 제출				
휴직급여	O 무급				
유의사항	○ 복귀 처리방법 : 별첨2 참고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O 육아휴직(일·가정 양립지원)

구분	내용				
근거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대상자	○ 근로계약체결자 중 임신중이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b>근속기간 6개월(연속X) 이상</b> 인 예술강사 ※ 근속기간 6개월은 기수 상관없이 21년부터 인정				
휴직기간	○ 근로계약기간 내 자녀 1명당 1년 이내 / (*해당자) 6개월 추가  * 해당자란?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인 경우 ③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분할사용	O 가능 : 최대 3회				
	o 고용보험센터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o (휴가 시작 30일 전까지) 온라인시스템 신청 예술강사 - 제출서류 : ① 대체강사요청서 ② 증빙(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해당자: 배우자 육아휴직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카드 ▼				
	<b>운영기관</b>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예정 예술강사 안내				
절차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요청				
	● ○ 온라인시스템 휴가/휴직 확인서 [작성] > [출력] ○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센터 접수 ○ 온라인시스템 휴가/휴직 확인서 [접수완료] ※ 완료 안내 문자 자동 발송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 <b>예술강사</b> ○ 고용보험센터 급여신청				
	●				
휴직급여	○ 통상임금 100% ○ 전액 고용보험센터 지급(고용보험센터로 예술강사 직접 신청 및 문의) : 별첨1 참고				
유의사항	<ul> <li>○ 복귀 처리방법: 별첨2 참고</li> <li>○ 육아휴직 중 자녀의 연령 및 학년이 바뀌더라도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 모두 부여</li> <li>○ 육아휴직 기간 중 강사의 출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의 변동 및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육아휴직 변경이 필요함</li> </ul>				

# ○ 경조사휴가(기타)

구분	내용				
근거	O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제30조의2				
대상자	O 근로계약체결자 중 결혼, 사망(장례), 입양 등 경조사가 있는 예술강사				
	O 근로계약기간 내 경	경조사 구분에 따른 휴가기간 부여			
	구분	대상	휴가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입양	본인	20일		
		① 본인의 부모 ② 배우자의 부모 ③ 배우자	5일		
휴가기간	사망 (장례)	<ol> <li>환인의 조부모, 외조부모</li> <li>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li> <li>자녀</li> <li>자녀의 배우자</li> </ol>	3일		
		① 본인의 형제자매 ②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결혼(본인)은 결혼 후 30일 이내 사용 가능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포함				
분할사용	O 불가				
		(경조사 발생일 익월까지) 온라인시스템 신청제출서류 : (친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 (경조)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등	명서 등 장 등		
	▼				
절차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o 오라인시스텐 건토 및 증인			
	▼				
	용영기관 이 경조사비 지급대장 검토 이 익월 13일 휴가급여 지급				
휴가급여	○ 2025년 평균 일급 기준 : 별첨1 참고 ○ 휴가일수 유급(시스템 자동 책정)				
유의사항	-				

# O 병가휴가(기타)

구분	내용			
근거	O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제30조			
대상자	O 근로계약체결자 중 질병(코로나19 포함)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한 예술강사			
휴가기간	O 근로계약기간 내 총 8일(출강 예정일 기준)			
분할사용	O 가능			
절차	o (휴가 종료 후 7일 전까지) 온라인시스템 신청 - 제출서류 : 증빙(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일반영수증 불가  ▼ 학교교사 운영기관 ○ 온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교육진흥원			
휴가급여	○ 2025년 평균 일급 기준 : 별첨1 참고 ○ 3일 유급(시스템 자동 책정)			
유의사항	○ 신청한 휴가기간이 제출서류 내 일자(진료일, 입원일, 가료기간, 처방교부일)에 포함 시 인정			

# O 기타휴직(무급)

구분	내용		
근거	O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		
대상자	O 근로계약체결자 중 기타 사유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예술강사(병가 일수 초과 등)		
휴직기간	O 근로계약기간 내		
분할사용	O 가능		
절차	예술강사       ○ 운영기관으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가능한 빠르게) 온라인시스템 신청         - 제출서류 : ① 대체강사요청서(휴가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② 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         ● 오라인시스템 검토 및 승인         ■출강사       ○ 정상복귀 : 휴직복귀신청서 운영기관 제출(휴직 종료예정일 이전)         ○ 조기복귀 : 운영기관 알림 및 조기복귀요청서 제출		
휴직급여	ㅇ 무급		
유의사항	O 복귀 처리방법 : 별첨2 참고		

# 3. 건강진단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예술강사 건강진단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O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결핵예방법」 제11조
- O 대 상 자: 2025 선발 학교예술강사 중 근로계약체결자
- 수검기간 : 근로계약기간 내 ※ 근로계약기간 외(전/후) 수검 불인정 및 비용 지급 불가
  - ※ (건강검진) 비사무직에 해당하여 연 1회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 (잠복결핵) 소속된 기간(2021~) 중 1회 실시이나 재수검 가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2)
- O 수검방법: 지정병원 또는 개별병원
  - ※ 타 병원 비용 발생 건에 대해 제출한 영수증과 통보서 검토 후 1인 기준 단가로 지급
  - 인천지역 지정병원: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경기지역 지정병원: 백병원, 엘병원, 성남중앙병원, 안양샘병원, 용인서울병원
  - 서울지역 지정병원: 삼성 내과
- O 수검결과 등록
  - 경로 : 온라인시스템(Aschool) > 인사/복무 > 건강진단(잠복결핵)관리 > 등록
  - 등록서류
    - ①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직장제출용)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 앞면 1장 (잠복결핵) 잠복결핵검사 결과지 앞면 1장
    - ② (실비신청 시) 영수증
- O 유의사항
  -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계약 체결 전 수검 시. 건강진단(잠복결핵) 비용 지급 불가
  - 건강진단 항목 내 잠복결핵 필수 포함 \*잠복결핵 미수검자에 한하여 필수 수검
  - 수검 예술강사가 온라인시스템에 첨부서류(건강진단 결과통보서(앞면) + 영수증)등록
  - ※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일,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앞면만 제출
  - ※ 세부 건강진단 결과 내역은 제출 불요

# 4. 증명서 발급

#### O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근로계약기간) 중에만 발급 가능

발급 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즉시(자동)발급		
바그 경구	인사/복무 〉 증명서발급 〉 경력증명서 신청 〉 경력증명서 〉		
발급 경로	[신청완료] 〉 증명서발급신청 내역 〉[출력]		

#### O 경력증명서 / 활동확인서

- 학교예술강사 진흥원 직접고용(2021~)에 따라 경력증명서와 활동확인서 구분 발급
- 2021년 이후 경력: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즉시(자동)발급		
바그 경구	인사/복무 〉 증명서발급 〉 경력증명서 신청 〉 경력증명서 〉		
발급 경로	[신청완료] 〉 증명서발급신청 내역 〉[출력]		

- 2010 ~ 2020년 경력: 활동확인서
- 2005 ~ 2009년 경력
  - (분야) 국악: 해당 소속기과으로 문의
  - · (분야) 그 외: 온라인시스템(Aschool) 기타증명서로 신청

발급 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즉시(자동)발급			
발급 경로	인사/복무 〉증명서발급 〉경력증명서 신청 〉활동확인서 〉 [신청완료] 〉증명서발급신청 내역 〉[출력]			
유의 사항	- 활동확인서 내 소속기관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인 경우 기타증명서 별도 신청을 통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 활동확인서 내 소속기관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아닌 경우 해당 소속기관으로 문의 ※ 기타증명서의 경우 신청 후 근무일 기준 3~7일 소요			

#### ○ 기타증명서(원천장수영수증, 채용예정증명서 등)

- 진흥원에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급 희망양식은 첨부 필요

발급 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즉시(자동)발급		
발급 경로	인사/복무 〉 증명서발급 〉 기타증명서 신청 〉 [등록] 〉 [신청완료] 〉 [보기] 〉 처리결과		
	〉[다운로드]		

#### O 유의사항

- 분야/연도별 발급기관을 필히 확인 후 발급기관 방식에 따라 신청
- 각종증명서 발급 관련 교육진흥원 문의: 콜센터(1600-0144, 내선 1번)

# 5. 강사 급여 지급

# ■ 강사 급여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구분	비고
		강사료	근로소득(과세)	O 월별 총 지출액(수업시수×1시수당 43,000원) - 세액 및 보험료(본인부담금) ※ 지급 시 인건비에서 본인부담금 및 원천세를 징 수하고 지급
		식대	근로소득(비과세)	ㅇ 출강월당 80,000원
017	701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소득(과세)	o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 산정방식은 추후 별도안내
임금	급여	법정의무교육비	근로소득(과세)	ㅇ 법정의무교육 이수자 75,000원 지급
		모성보호휴가급여	근로소득(과세)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 난임치료, 출산, 유산·사산, 배우자 등
		유급병가	근로소득(과세)	o 8일의 병가 범위 내에서 3일 유급 처리 o '25년 평균 일급 기준으로 산출
		휴업수당	근로소득(과세)	ㅇ (평균임금) 통상시급의 70%
	실비변상적금 품	교통비	실비변상	O 원거리 출강 강사에게 지급되는 거리 산정 O 별도 책정 기준 있음
		도서벽지출강보조금	실비변상	○「도서벽지교육진흥법」대상 도서벽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시수당 12,000원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 20만원이하 금액은 비과세
		장애인출강보조금 (교통보조금형태)	실비변상	ㅇ 출강일당 10,000원 지급
임금이 아닌 것		선박운임 이용료 및 숙박비 등	실비변상	o 발생 시 필요비용 지급 o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는 기타비용으로 명시
		건강진단검진 비용	실비변상	o 발생 시 필요비용 지급
	은혜적 금품	경조휴가비	비과세소득	o 경조 사유별 휴가일수에 따라 지급 o '25년 평균 일급 기준으로 산출
	근로계약 전 보조금	사전방문 보조금	기타소득	ㅇ 사전방문 학교당 43,000원 지급
		사전방문 교통비	실비변상	O 원거리 출강 강사에게 지급되는 거리 산정 O 별도 책정 기준 있음
기타 참고사항	[공통사항] ○ 급여 및 사회보험료, 세액 책정 등은 교육진흥원이 지정한 수탁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 ○ 매년 12월 말까지 출강결과 등록이 되지 않은 수업시수의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 불가, 이처럼 연말을 넘기는 이월 강사 급여가 발생될 경우, 고용주체(교육진흥원)는 소득세 신고납부 미이행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수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액을 합산한 금액해당			

# ■ 지급방법

- O 지급시기: 익월 13일
- 지급방법: 온라인시스템 급여대장 확인 후, 예술강사 본인명의의 계좌로 실지급액 지급
  - 급여명세서는 예술강사가 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임금(급여)]

### ① 강사료

- 지급목적: 운영기관은 사용자(교육진흥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예술강사) 대상 근로(교육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함
- 지급기준: 시수당 43,000원 지급
- 과세구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간 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세율 적용하여 교육진흥원에서 세액 납부

### ② 식대

- 지급목적: 예술강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적향상 도모
- 지급기준: 월 80.000원 지급(실제 출강한 월에 한함)
- O 지급기관
  - 선발 지역에서만 출강하는 강사: 선발지역 운영기관에서 지급
  - 출강지역이 2개 이상인 강사: 출강시수가 많은 운영기관에서 지급
- 과세구분: 월 20만 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 범위에 해당

### ③ 근로자의 날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지급목적: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함. 관련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5.1.) 시점 계약 체결 관계의 예술강사 대상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 함
- O 지 급 일: 5월 귀속 급여 지급일
- O 지급기준

구분	내용		
	· 지급대상 : 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날(5.1.)이 포함된 예술강사 · 지급기관 : 선발지역 · 산정방법 : 통상임금 일급 ※ 휴가 사용자 처리 기준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사용자 예외 ※ 온라인시스템에 휴가가 승인되어야 예외처리 되므로 강사료 확정 전 승인 필요		
	지급 가능 병가, 경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 배우자출산휴가는 지급 예외 대상이나, 휴일 사용이 불가하므로 해당 강사의 계약기간 내 근로자의날 포함 시 지급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의 날(5.1.)에 출강한 경우 아래 산정식에 따라 지급(휴가휴직자 제외) · 지급기관 : 출강지역 · 산정방법 : 통상임금 시급분×출강시수×1.5		

○ 과세구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처리

### ④ 법정의무교육비

○ 지급목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의무사항 준수를 위함

○ 지급일: 승인시 입력한 귀속월의 익월 13일

○ 지급기준: 법정의무교육 이수자 75,000원 지급

○ 과세구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처리

# ⑤ 모성보호휴가급여

○ 지급목적: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 록 하기 위하여 모성보호휴가급여를 지급함

○ 지급일: 휴가급여 승인월의 익월 13일

O 지급기준

구분	세부내용	
출산전후휴가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진흥원의 근로자(예술강사)는 고용보험센터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 지급받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교육진흥원 60일 통상임금 〉고용보험센터 60일 지급액'인 경우 교육진흥원은 차액분을 지급함	
유사산휴가비	○ 출산전후휴가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급휴가 처리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 상이하여 해당 일수에 따라 지급	
난임치료휴가비	O 연간 2일 유급. 통상임금 일급형태로 지급(연간 최대 6일 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출산휴가비	○ 연간 20일 유급. 통상임금 일급형태로 지급 ○ 출산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청구시 지급 불가	

○ 과세구분: 사업장(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휴가급여는(최대60일분)은 과세 대상이며,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처리 필요함. 보험료 산정이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사업 장에서 지원하는 기간의 비용에 대해서만 고려함

### ⑥ 병가비

- 지급목적: 예술강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적향상 도모
- O 지 급 일: 승인월의 익월 13일
- 지급기준: '25년 평균 일급 기준. 근로관계에 있는 예술강사가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 신청하는 경우 연간 3일까지 유급(연간 최대 8일 휴가 사용 가능)
- 과세구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처리

### ⑦ 휴업수당

- 지급목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구조와 근로형태를 고려, 근로기준법 사용자 의무사 항 준수를 위해 지급(예술강사가 약정된 출강일에 수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교육진흥 원/운영기관/학교의 귀책으로 출강과 보강이 제한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수당 지급)
- 지급일: 심의 결과 확정시 별도 지급일자에 지급
- 지급기준: 해당시수X통상시급의 70%
- 과세구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처리

### ■ [실비변상적금품]

### 교통비

- 지급목적: 원거리 출강강사 대상 교통 보조 성격의 비용을 지급함
- O 지 급 일: 출강월의 익월 13일
- 지급기준: 예술강사 출강 시 이동거리 30km 이상일 경우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함(동일 시·군내 제외)
- O 기타사항
  -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학교 출강 경우, 원거리(많은 액) 기준 지급
  - 교통비 미지급: 동일사군 내 출강자(동일사군 내 출강자의 경우 왕복 이동거리 30km 이상인 경우에도 교통비 미지급)/ 왕복 이동거리가 30km 미만인 경우 등

### ② 도서벽지 출강보조금

- 지급목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서벽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이동의 곤람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워
- O 지 급 일: 출강월의 익월 13일
- 지급기준: 지급규정에 따라 <u>시수당 12,000원</u>으로 지급함

## ③ 장애인 출강보조금

- 지급목적: 장애인 예술강사의 생활안정 및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 교통 보조 성격의 비용을 지급함
- O 지 급 일: 출강월의 익월 13일
- 지급기준: 지급규정에 따라 출강일당 10,000원으로 지급함
- 기타사항: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를 포함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급을 신청해야하며, 승인 이후부터 보조금 지급함

### ④ 선박 운임 이용료 및 숙박비 등

- 지급목적: 섬 지역 출강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선박 운임 이용료,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여 교통편의 지원
- O 지 급 일: 승인월의 익월 13일
- O 지급기준: 예술강사가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정산함
- ※ 사전 책정된 금액 이하 실비 정산

(1박당 서울특별시: 10만원 / 광역시: 8만원 / 그 밖의 지역: 7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 숙박비 지급 판단기준은 관련 진흥원과 사전협의 후 진행 필요
  - : 지역별 현황(숙박이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술강사 대상으로 안내하되, 해당 사항은 <u>진</u> 흥원과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
- [참고] 숙박비 지급 사례 : 도서벽지에 2일 이상 연속 출강하는 경우, 출강일 당일 선박 이용 불가한 경우, 출강일 당일 대중교통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기타사항: 실비 영수증을 포함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급을 신청해야 함. 최종 지급금액은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지급 시 '기타비용'항목으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됨

### ⑤ 건강진단(잠복결핵) 비용

- 지급목적: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실비 지원
- 지급일: 발생시
- O 지급기준
  - 지역운영기관에서 검사 항목별 보건복지부 검진비용을 참고하여 지급기준 금액 책정
  - 수검자가 온라인시스템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기준 금액 이하 실비 정산
  - 지급기준 금액 초과분은 수검자 개별 부담

### ■ [은혜적 금품] 경조휴가비

### 경조휴가비

- 지급목적: 예술강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적향상 도모
- O 지급일: 승인월의 익월 13일
- 지급기준: '25년 평균 일급 기준, 근로관계에 있는 예술강사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결혼, 입양. 사망) 경조휴가를 부여하여 휴가일수에 대해 지급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①본인의 부모 ②배우자의 부모 ③배우자	5일
	①본인의 조부모, 외조부모 ②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①자녀 ②자녀의 배우자	3일
	①본인의 형제자매 ②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 [근로계약전 보조금] 사전방문 보조금 및 관련 교통비

#### ① 사전방문 보조금

- 지급목적: 사전방문 보조금은 예술강사가 근로계약 체결 전, 학교와 출강 관련 협의를 위해 방문한 경우 지급함
- 지급기준: <u>한 학교당 1회에 한하여 43,000원</u>지급함
  - 대면 방문 후 사전방문 보고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유선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협의 시 지급 불가)
  - 동일 1개교에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각각 배치 받은 경우에도 1회만 지급

### ② 사전방문 교통비

- 지급목적: 예술강사가 이동거리 30km 이상일 경우(동일 시·군내 제외) 지급함
- 지급기준: 예술강사 출강 시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함
  - 관련서류(사전방문 보고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급(유선 또는 이메일 협의 지급 불가)
- 기타사항은 일반 교통비 지급 유의사항 참조

부록1.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가이드 영상 QR

### 예술강사용 [가이드 영상 QR코드]



가이드영상(강사용)

 $\underline{https://youtu.be/qzcleqk3iz0?si=WCF1\_olfXrwawwUK}$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육활동 안내 영상 QR코드]



'25 교육활동 안내

https://youtu.be/sHMXhfKRcR0?si=4lpbAw4kfJmFBIrs